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

스티브 쿨리 검사장

유자격 수표	• 수표는 물품과 개인재산, 서비스의 사용을 받기위해 사용되었거나 현금으로 사용되어진 것. • 수표는 "잔고부족"(NSF: non-sufficient funds), "구좌폐쇄"(Account-Closed), "발행인 회부"(Refer to maker), "주소불명"(Unable to Locate) 또는 "지불정지"(Stop Payment)라는 은행의 도장이 찍혀져서 돌아온 것이어야 하나,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 상담실로 연락하기 바란다. • 수표금액은 규정이 없음. • 수표는 캘리포니아 은행구좌에서 인출되어진 것. • 수표처리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관할내에서 이루어진 것. • 가주 자동차 면허증 번호를 수표에 적고 확인한후 수표를 받음. • 수표 발행인에게는 전화나 우편으로 부도수표에 대해 10일 정도의 유예기간(Grace Period)을 연장해준다고 알렸어야 한다. 우편 통지는 배달 증명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.
부적격 수표	• 도난수표, 가짜수표, 위조수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지역경찰에 보고한다. •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(Two Party), 정부수표, 타주수표,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것,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는다. 이런 수표들은 소액재판소로 가야한다. • 지불되지 않은 잔액이 있거나 부분 납부금으로 사용된 수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는다. • "사후입금"(Post-Dated) 수표나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기로 한 수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는다. • 할부금으로 받거나 신용카드 연기로 받는 수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는다.
신청방법	• 처리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. • 수표 발행인마다 한장의 경위서(Complaint Form)를 사용할 것. 한 발행인이 여러수표를 발행했을 경우는 한장의 경위서를 사용한다. • 전화나 우편으로 수표발행인에게 알리려한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다. • 관련된 모든서류를 복사해서 보관하고, 모든 원본은 검찰청 프로그램으로 보낸다. • 경위서를 가능한한 철저히 작성하고, 수표원본과 관련자료(은행통지서-Bank Notice, 배달증명 영수증-Certified Mail Receipt, 법원편지 복사본-Copy of the Courtesy Letter)등을 아래의 주소로 우송한다. **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** **Bad Check Restitution Program** **PMB 880** **7095 Hollywood Blvd., Suite 104** **Hollywood, CA 90028-8903**
신청후 절차	• 경위서를 보고한 후 개별적으로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되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으로 지불하라고 알려 준다. **수표 발행인 전화(Check Writer Line) - (800) 269-0206** • 경위서를 보낸후 45일에서 60일 정도 지나야 상황을 알수 있다. **부도수표 피해자 직통 전화(Victim Hotline) - (800) 842-0733** 수표에 대한 손해배상이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수금(Collected)이 되면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수표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수표발행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적합성에 대한 것을 검사가 조사한다.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면 수표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.